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3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: 2025. 12. 9.

제안자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으로 신설된 교육문화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 규정

1) 행정위원회: 교육문화국 추가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없음

다. 입법예고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(생략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행정위원회 가.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나. ~ 사.</u> (생략) 3. (생략) ③ (생략)	제26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<u>나.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다. ~ 아.</u> (현행 나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